

# —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검 토 보 고 서

### 1. 제 안 자 : 구미시장

### 2. 제안이유

-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전문적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사회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구미시립노인 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병원의 업무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함(안 제3조)
- 나. 병원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 효율적인 병원운영을 위해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함.
  - 병원운영은 독립채산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 공유재산의 사용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손·망실시는 수탁자가 부담(안 제5조)
- 라. 의료수가 적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적용하되, 국민건강보험법 비급여 항목은 위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안 제6조)

마. 수탁자는 환자의 인권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며 수탁 재산을 신축·개축·변경시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바. 회계 및 결산(안 제8조)

- 병원운영의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
- 매년 정부회계 연도 20일전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2개월전에 제출

사. 보고 및 감독(안 제9조)

-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운영에 관한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매2년마다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지실사를 통해 병원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실시

아.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협약사항 위반,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는 위·수탁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 135조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35조
- 의료법 제30조 제2항

####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치매환자가 가정 및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사회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설립되는 구미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며,
- 주요내용은 병원의 업무관장 범위, 위탁자격 기준 및 위탁기간, 병원 운영방법, 공유재산의 사용, 의료수가, 수탁자의 의무, 회계 및 결산, 보고 및 감독, 위·수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조례안 제4조 제2항중 “다만, 수탁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의할 수 있다.”의 단서내용에 “수탁자 선정”시에 선정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추가함이 타당하며
- 아울러 안제8조 제2항중 수탁자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이 매년 정부회계 연도 개시 20일전까지로 규정된 것은 시장이 사업계획수립의 타당성 검토 등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므로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을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 본 조례와 관련하여 「구미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005. 7. 14 제10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임.